

## 統一新羅의 치마에 관한 연구 A Study of Tongil-Shilla(統一新羅)'s Skirt(裳)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강사, 인하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권준희 · 조우현\* · 남윤자\*\*

Lecturer,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Seoul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Inha University

\*\*Professor,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Seoul National University

**Kweon, Jun-hee · Jo, Woo-hyun\* · Nam, Yoon-ja\*\***

(2001. 11. 12 접수)

### Abstract

Heungdukwang's(興德王) costume ordinance(834A.D.) is a very important written historical record because it reveals Tongil Shilla's(統一新羅) costume. And among the clothing pieces that appeared in Heungdukwang's(興德王) costume ordinance, from Pyosang(表裳), Naesang(內裳), we know they wore one skirt over another. But skirts appearing in visual records are worn in waist line or breast line, and when they wore skirts in breast line, there were shoulder belts or not. Also among the clothing pieces that appeared in Heungdukwang's(興德王) costume ordinance, Yo(褸) and Ban(褌) seems to be connected with skirt. but it is not clear. So this study focuses on the history of wearing skirt in breast line and one skirt over another, shoulder belts of skirt, and relation among Yo(褸), Ban(褌) and skirt.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wearing skirt in breast line is already appeared in Ancient Shilla's(新羅) clay figure, and wearing one skirt over another is also appeared in Sunhung tomb's mural painting. so it is not completely under the influence of Tang(唐).

Second, the shoulder belts of skirt is for convenience of action, But, at that time, there is no shoulder belts of skirt in Tang(唐).

Third, between Yo(褸) and Ban(褌), If Yo(褸) is connected with skirt, it is a shoulder belts of skirt or waist of skirt. And Ban(褌) is a girdle of skirt.

**Key words:** Tongil Shilla(統一新羅), Skirt(裳), Yo(褸), Ban(褌); 통일신라, 치마(裳), 요(褸), 반(褌).

### 1. 서론

興德王9년(834)에 내려진 服飾令은 統一新羅의 복

\* 본 논문은 2002학년도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부속 생활과학연구소 일부 연구비 지원으로 수행  
되었음.

식제도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그 중 여자의 치마는 表裳과 內裳에 관한 기록으로부터 당시 치마를 이중으로 착용하였고, 表裳이 平人女에게까지 규제가 가해진 것과 달리 內裳은 4頭品女 이하에는 규제가 없어 치마를 겹쳐 입는 것은 5頭品女 이상의 신분이 높은 계층에서 가능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복식령 가운데 소재에 관한 규제를 보면 <표 1>

〈표 1〉 三國史記 흥덕왕복식령에 나타난 表裳, 內裳, 褙襟의 기록

구분	眞骨女	六頭品女	五頭品女	四頭品女	平人女
表裳		禁 罽繡錦羅總羅 野草羅 金銀泥 縹縹	禁 罽繡錦總羅 野草羅 金銀泥 縹縹	只用 縹縹 以下	只用 縹縹 以下
內裳		禁 罽繡錦羅 野草羅	禁 罽繡錦 野草羅 金銀泥 縹縹	無內裳	
褙襟		禁 罽繡	禁 罽繡錦羅	褙與裳同 襟用 越羅	襟 只用 縹縹 以下

과 같이 6頭品女의 表裳에서는 金銀泥 縹縹을 금하고 있지만 內裳에서는 이러한 규제가 없고 5頭品女의 內裳에서만 金銀泥 縹縹을 금하고 있어 表裳보다 오히려 內裳이 더 화려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당시 여자의 치마를 착용한 시각자료에서 보면 치마를 이중으로 착용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 그리고 허리선에서 혹은 가슴선에서 치마를 착용하고 있는 것, 또 가슴선에서 치마를 착용하고 있는 경우는 어깨끈이 있는 것과 없는 것 등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복식령 중 褙襟은 4頭品女의 경우 褙如裳同, 襟用越羅라 하여 각각 서술하고 있으며, 平人女에게는 褙의 금제는 보이지 않고 襟只用縹縹以下라 하여, 襟은 모든 여성에게 따르는 것이지만 褙는 4頭品女 이상에게 따르는 복식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4頭品女의 禁制에서 褙如裳同이라고 한 것으로부터 褙는 치마에 부속되는 것으로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고 襟 역시 치마와의 관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아직 명확하지 않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첫째, 가슴선에서 치마를 여며 착용하고 또 이중으로 치마를 착용하게 된 역사적 변천을 중심으로 당시 치마의 착용방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두번째, 시각자료 중 일부에서 보이고 있는 치마의 어깨끈을 주변국들과 비교 검토하여 신라내 치마에 어깨끈이 형성되기까지의 과정에 대해 검토하고,

세번째, 흥덕왕 복식령에 나타난 복식 중 褙襟과 치마와의 관련성 문제를 명확히 함으로써, 그동안 선행연구의 성과를 기초로 통일신라의 치마에 관해 규명해 보고자 한다.

## II. 치마의 착용방식과 명칭

### 1. 치마의 여밈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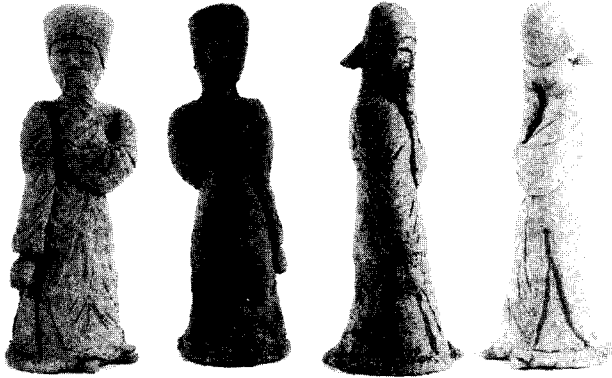
통일신라의 시각자료를 보면 먼저 황성동 토용(그림 1)과 용강동 토용(그림 2)은 가슴선에서 치마 여미고 있고 불국사부근에서 발견된 개인소장의 토제 여인상(그림 3), 상주소재 주악천인상과 공양천인상(그림 4), 경주박물관 야외 전시물 중 기단석에 표현된 인물(그림 5)은 허리선에서 치마 여며 착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치마를 허리선에서 여며 착용하는 것은 고구려 고분벽화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것으로 삼국시대 이래 고유의 착용방식이고, 치마를 가슴선에서 착용하는 것은 眞德王 2년(648) 김춘추에 의한 唐 복식 도입 이후 文武王 4년(664) 婦人之服飾도 중국의 복식과 같게 함<sup>1)</sup>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古新羅期 토용에 나타난 복식을 살펴보면(그림 6)에서는 치마를 허리선에서 여며 착용하고 그 위에 엉덩이선 길이의 저고리를 착용하고 있는 것이 명확하지만, (그림 7)에 의하면 치마를 가슴 바로 아래에 착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것은 치마 위에 上衣를 입는 일반적인 착장법과 달리 上衣 위에

1) 『三國史記』卷第33 雜志第2 色服條

“至眞德在位二年 金春秋入唐 請襲唐儀 泰宗皇帝詔可之 兼賜衣帶 遂還來施行 以夷易華 文武王在位四年 又革婦人之服 自此已後 衣冠同於中國”

2) 권준희, 「古新羅期 토용에 나타난 복식 연구」, 『服飾』51 권 4호, 한국복식학회, 2001, 67쪽.



[그림1] 國立慶州博物館, 『慶州皇城洞石室墳』, 1993, 원색사진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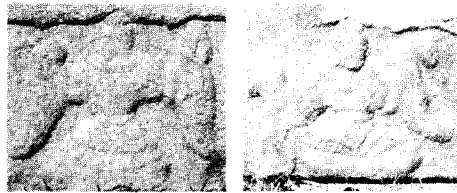
[그림2] 『한국인의 얼굴』, 국립민속박물관  
도록, 1994, 도판52 부분



[그림3]  
河外柱 編, 『鳩峰 河外柱  
所藏品圖錄』, 서울 : 호영,  
1991, 도판22



[그림4]  
<http://kr.encycl.yahoo.com/ifi.html?id=8583>  
<http://kr.encycl.yahoo.com/ifi.html?id=85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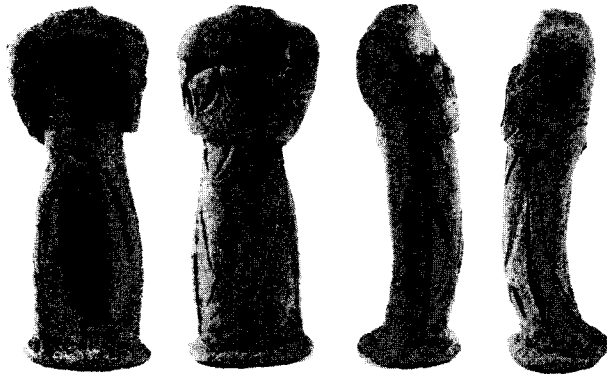


[그림5] 경주박물관 야외 전시물 중 기단석에  
표현된 인물(본인촬영)

[그림6] 국립경주박물관, 특별전 『신라토우』,  
1997, 도판83



[그림7]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 『皇  
南大塚 南墳 發掘調査報告書』  
도판 · 도면, 1993, 도판 350-4



[그림8] 國立慶州博物館, 『慶州皇城洞石室墳』, 1993, 원색사진6



[그림9] 吳哲夫 編, 『中華五千年文物集刊 服飾篇 上』, 中華五千年文物集刊 編集委員會 : 臺北, 1985, 도판181

치마를 입어 나타난 허리선으로 보인다.<sup>3)</sup> 따라서 비록 치마를 가슴선에서 착용하는 양식이 唐 복식 도입 이후 본격적으로 신라에 나타난 것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古新羅期 이미 존재하였던 양식일 가능성이 크고 또한 統一新羅期에도 완전한 唐 복식만은 아니고 삼국시대 이래 지속되어온 허리에 치마를 착용하는 고유의 착용방식과 함께 공존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2. 이중치마의 착용

이중치마의 착용은 황성동 토용(그림 1)과 상주소재 주악천인상과 공양천인상(그림 4)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데 먼저 황성동 토용(그림 1)은 치마의 옆선에서 무릎 아래 절개선이 표현되었고 아래로 갈수록 벌어진 모양을 표현하고 있으며 다른 1점(그림 8)은 벌어진 표현은 명확하지 않지만 허리선 아래로 역시 縱線을 길게 묘사한 점으로 미루어 치마의 옆선에 절개선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상주소재 주악천인상과 공양천인상(그림 4)에서는 치마의 하단에 잔주름이 있는 또 다른 裳이 표현되어 있다. 이는 흥덕왕 복식령 중의 表裳 內裳과 연결하여 볼 수 있고 통일신라에서의 表裳과 內裳은 表裳의 옆선에 절개선을 넣거나 表裳의 길이를 內裳보다 짧게 하여 內裳을 드러내 보이게 하는 방식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이중치마의 착용은 당시 주변국에서도 존재하였던 것으로 唐代의 자료(그림 9)에 의하면 表裳을 다른 끈으로 묶어 짧게 함으로써 內裳을 드러내는 방

법 또한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일본에서도 『續日本後紀』의 承和9년(842)에 귀천을 불문하고 여자에게 치마를 겹쳐 입는 것을 금하도록 한 기록<sup>3)</sup>과 『延喜式』의 表裙, 下裙, 그리고 『續日本後紀』와 같은 착용금지 기록<sup>4)</sup>에 의해서 치마를 겹쳐 입는 것이 행해졌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중국이나 일본의 경우는 치마를 이중으로 착용한 사실이 확인은 되지만 통일신라의 흥덕왕 복식령에 4두품이하에서는 內裳을 착용하지 못하도록 한 것과 같은 신분에 따른 세부규정은 찾아볼 수 없다.

그런데 古新羅期 순흥 於宿墓 벽화인물(그림 10)의 上衣 하단에는 주름 장식이 묘사되어 있어 이중치마

### 3) 『續日本後紀』

“頃者風俗繞澗鳴弊相屬省費之術儉約是憑宜自今以後女所服裳夏之素紗冬中裙不論貴賤一切禁斷一裳之外不得重著”

### 4) 『延喜式』卷2, 神祇2, 四時祭下

“官人以下裝束料.....御巫一人 御門巫一人 生鳴巫一人 各青搭袍一領表裏別帛三丈 綿二屯 下衣一領表裏別三丈 綿二屯 單衣一領帛三丈 表裙一腰表裏別帛三丈 腰料一丈 綿二屯 下裙一腰表裏別帛三丈 腰料一丈.....座摩巫一人 青搭袍一領表裏別帛二丈五尺 綿一屯 下衣一領表裏別二丈五尺 綿一屯 單衣一領帛二丈五尺 表裙一腰表裏別帛三丈 腰料一丈 綿一屯 下裙一腰表裏別帛三丈 腰料一丈.....”

### 『延喜式』卷41, 彈正臺

“凡婦人 袷裳不論貴賤一裳之外不得重著單裳不在制限”



[그림10-1]

金元龍 主編, 『壁畫』韓國美術全集4, 同和出版社, 1974, 도판106



[그림10-2]

東潮, 『高句麗考古學研究』, 吉川弘文館, 平成9年(1997), 325쪽



[그림11]

中國美術全集編輯委員會編, 『中國美術全集』繪編12, 墓室壁畫, 文物出版社, 1989, 도판41



[그림12]

甘肅省文物工作隊, 炳靈寺文物保管所編, 『永靖炳靈寺』中國石窟, 文物出版社, 1989, 제169골, 도38



[그림13] 陝西省博物館 編, 『陝西省博物館』, 北京:文物出版社, 1990, 도판113



[그림14] 朝鮮畫報社出版部 編輯, 『高句麗古墳壁畫』, 朝鮮畫報社, 1985, 도판5의 부분



[그림15] ジャン・フランソワ・ジャリ-ジュ, 『西域美術』2, 東京:講談社, 1994, 도판21-4

착용과의 관련성 문제가 대두된다. 어숙묘는 묘지명 “乙卯年於宿知述干”에 나타난 “述干”이라는 官等名과 더불어 “乙卯年”이라는 干支로부터 축조연대는 535년으로 추정된다.<sup>5)</sup> 上衣 하단의 주름장식은 중국에서는 魏晉시기(220-316)의 嘉峪關墓 벽화인물(그림 11)에서 확인되는데 이는 漢末시기 유행한 무릎정도 길

이의 남성의 短裙으로 판단된다.<sup>6)</sup> 그리고 이러한 짧은 치마는 秦漢 이래 여성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炳靈寺 제169골의 西秦(384-417)시기 공양자상(그림 12)이나 敦煌 莫高窟 제 285골의 西魏(535-556) 공양자상,

5) 정운룡, 「순흥 음내리벽화고분의 신라사적 의의」, 『백산학보』제52호, 서울:백산학회, 1999, 179쪽.

6) 戴爭 編著, 『中國古代服飾簡史』, 北京:中國輕工業出版社, 1988, 48쪽.

또한 여성에게도 무릎길이의 短裙은 착용되었는데 이는 長裙 위에 입는 것이었다.(50쪽)

初唐시기 李壽墓 石槨 線刻畫 인물(그림 13) 등의 복식이 그러하다. 또한 긴 치마 위에 짧은 치마를 이중으로 착용한 모습은 고구려 안악3호분(그림 14)에서도 확인된다.

다만 (그림 11)을 제외한 이상의 시각자료는 순흥어숙묘 벽화인물은 上衣 하단에만 주름 장식이 묘사된 것과 달리 襦위로 긴치마와 짧은 치마를 착용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서로 차이점을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上衣 하단의 주름장식만으로는 (그림 15)와 같은 겹옷 안에 착용한 內衣<sup>7)</sup> 하단 장식에 의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신라의 於宿墓가 발견된 순흥지방이 고구려와의 교류가 중시되었던 지방이었음을 감안한다면 고구려와 신라의 복식교류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측되고 삼국시대 긴치마 위에 짧은 치마를 이중으로 착용하는 방식은 고구려와 신라의 공통현상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어숙묘에서 上衣 하단의 주름 장식으로 표현된 것은 고구려에서는 짧은 치마와 긴치마를 襦 위에 착용하는 언더블라우스(underblouse) 방식이었던 반면 신라에서는 짧은 치마와 긴치마를 먼저 착용하고 그 위에 襦를 착용하는 오버블라우스(overblouse) 방식으로 착용 방법에서 서로 차이점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상으로부터 통일신라시대 보여지는 이중치마의 착용은 古新羅期 이미 그 개념이 형성되어 있었고 다만 당복식의 도입으로 치마를 이중으로 착용하는 것이 더욱 일반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 3. 表裳, 內裳의 명칭

앞에서 통일신라시대 치마는 허리선 여밈과 가슴선 여밈 두 종류가 있었고, 가슴선 여밈의 경우에는 치마를 이중으로 착용하는 경우도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흥덕왕 복식령 중의 表裳, 內裳과 연결해 보면, 먼저 치마를 이중으로 착용하든 아니든 하나만 착용하였든 가장 겉에 착용한 치마의 명칭은 表裳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內裳의 기록이 없는 4두품녀나

평인녀의 치마에 관한 기록은 表裳만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다만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허리선 여밈용의 치마와 가슴선 여밈용의 치마는 그 길이에서 차이가 났을 터인데 모두 表裳 혹은 內裳이라는 동일명칭을 사용하였을까하는 문제이다. 혹은 길이가 다른 두 종류의 치마에 表裳이라는 동일명칭을 사용했다하더라도 실제 착용시에는 신분에 따른 가슴선 여밈과 허리선 여밈의 차이가 존재했을 가능성도 제기될 수 있다.

이 문제는 치마와 함께 착용하는 上衣와 관련된 것으로 흥덕왕 복식령에 나타난 복식 중 上衣류의 신분별 착용과 더불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최소한 엉덩이선 이하로 내려와 허리선에서 帶의 여밈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는 여성의 上衣류는 內衣<sup>8)</sup>, 半臂<sup>9)</sup>이고, 허리선 정도의 길이가 짧은 上衣류는 短衣, 襦褙이다. 이 중 內衣는 眞骨女에서 平人女까지 모든 여성에게 착용이 허용된 반면 短衣, 半臂, 襦褙는 4두품녀까지만 착용되고 平人女에게는 허용되지 않았던 복식이다. 먼저 眞骨女에서 4두품녀의 경우 허리의 帶로 여밈은 內衣와 半臂 着用時, 그리고 길이가 짧은 短衣, 襦褙 着用時의 치마는 그 길이에서 차이가 날 수 밖에 없고 따라서 각각의 치마는 전자의 경우는 허리선에서 여밈 입고 후자는 가슴선에서 여밈 입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허리선 여밈용, 가슴선 여밈용 두 종류의 치마가 모두 존재하였을 眞骨女에서 4두품녀까지의 치마는 흥덕왕 복식령에 의하면 表裳, 內裳이라는 명칭만으로 기록되어 있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表裳과 內裳은 치마를 이중으로 착용하면서 나누게 된 명칭으로 여밈의 위치는 동일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眞骨女에서 4두품녀까지 착용하였던

8) Kweon, Jun-hee · Jo, Woo-hyun · Nam, Yoon-ja, "A study of Shilla(新羅)'s Naeoe(內衣), Danoe(短衣)", 『2001 International Costume Conference』, 96쪽, Poster Session 논문 초록 참고.

9) 半臂와 襦褙의 관계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半臂가 남녀 공용의 복식인 반면 襦褙는 여성에게만 허용된 것인데 황성동, 용강동 토용에 나타난 당시 남성의 半臂는 모두 무릎선 길이였음을 감안한다면 여성의 半臂도 같은 길이였을 것으로 판단되고 이에 여밈을 위한 허리의 帶가 필요하였을 것이다.

7) 여기에서의 內衣는 흥덕왕 복식령 중에 나타난 內衣와는 다른 단순히 '겹옷 안에 착용한 옷' 이란 의미를 밝혀둔다.



[그림 16]

關根眞隆, 『奈良朝服飾の研究』, 吉川弘文館, 1974, 도판 17쪽



[그림 17]

吳哲夫 總編輯, 『中華五千年文物集刊 古俑篇』, 臺北: 中華五千年文物集刊編輯委員會, 民國 77(1988), 209쪽 도281



[그림 18]

張鴻修, 『中國唐墓壁畫集』, 嶺南美術出版社, 1995. 29쪽, 도판 13

表裳은 허리선 여밈용, 가슴선 여밈용의 두 종류가 존재하였지만 동일명칭을 사용하였던 것으로 분석된다. 다음 平人女의 경우 착용이 허용된 上衣는 內衣뿐인데 內衣는 허리선에서 帶로 여며 입는 삼국시대 이래의 襦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아래에 착용하였을 치마는 허리선에서 여며 착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통일신라시대 眞骨女에서 4頭品女는 허리선 혹은 가슴선에서 치마를 여며 입었지만 모두 表裳이라는 동일명칭을 사용하였고, 平人女의 表裳은 허리선에서 여며 입는 삼국시대 이래의 고유의 방식으로 착용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表裳, 內裳의 이중치마 착용은 현재의 시각자료만으로는 가슴선 여밈 경우에 한정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4頭品女는 치마를 가슴선에서 여며 착용하기는 하였으나 內裳의 不在로 이중치마 착용은 허락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 III. 치마의 어깨끈

치마에 치마말기가 있고 어깨끈을 다는 구조는 일

본의 正倉院寶物 중 烏毛立女屏風(그림 16)나 중국의 경우 隋代白釉捧罐女俑(그림 17) 그리고 唐代 초기 李壽(577-630)묘 벽화인물(그림 18)에서도 찾아볼 수 있지만 일부분에 지나지 않고 더욱이 중국에서는 隋代이후 唐초기까지는 보이지 않지만 7세기 중엽 이후 여성적인 곡선미를 강조하기 시작하면서 어깨끈은 사라지게 된다.

반면 8세기 경의 신라 용강동 여용의 치마에는 모두 어깨끈이 연결된 점이 주변국과는 다른 일면을 지닌다. 여기에서 下衣를 가슴선에 여미는 것은 착용시 활동상의 제한을 초래할 수 있고 허리에 下衣를 착용하던 습관에 비교하여 더욱 부자연스러울 수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에 7세기 후반초 황성동 토용에서는 보여지지 않던 치마의 어깨끈이 시기적으로 더 후대로 보여지는 8세기 용강동 여용에서 보여진다는 점으로부터 가슴선에서 치마를 착용하게 되면서 활동상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부가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그리고 이러한 치마의 어깨끈은 단순히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전파의 문제가 아니라 복식 발달 과정상 당연한 결과로 여겨지며, 이에 당이나 일본과는 다르게 신라에서는 어깨끈이 부착된 치마가 일반적으로 행하여졌으리라 본다.

10) 평인녀에게는 表衣도 물론 허용되었지만 여기에서의 上衣는 袍 이외의 것을 의미한다.

#### IV. 褙와 褙

褙와 褙에 관한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먼저 褙는 『玉篇』에 '褙腰褙也'라 하여 허리끈의 의미임을 알 수 있고, 또 『集韻』과 『正字通』에는 '褙衣褙也'라 하여 옷을 여미는 끈의 일종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리고 褙는 『集韻』에 '褙衣系曰褙'이라 하여 褙와 褙 모두 옷을 여미는 일종의 끈에 해당하지만 褙는 褙과 달리 허리끈의 의미도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晉書』五行志에 '泰始初衣服上偏下豐著衣服皆壓褙'라 하여 泰始년간(265-274)上衣가 좁아지고 下衣를 풍성하게 입게 되면서 옷을 입을 때 모두 褙에 신경을 쓰게 되었다는 기록으로부터도 알 수 있다.

기존의 견해를 살펴보면 사전적 의미에 의거하여 대체로 褙는 치마허리나 치마끈으로, 褙는 옷고름이나 치마의 어깨끈으로 보고 있다.<sup>11)</sup> 그러나 사전적 의미만으로 흥덕왕 복식령 중의 褙와 褙의 의미를 풀기에는 부족하다. 이에 褙가 4두품녀 이상에게 서술된 반면 褙는 평인녀에게까지 규제가 가해진 점에 착안하여 동일 신분에게 착용이 허용된 다른 복식들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褙와 褙의 의미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 1. 褙

『三國史記』의 기록에서 褙는 平人女에게는 禁制가 없으므로 4頭品女 이상의 복식에 따르는 것이고 또한 4頭品女의 禁制에서 褙如裳同이라고 한 것으로부터 褙는 치마에 따르는 치마허리 혹은 치마끈으로 보는 견해가 존재함은 앞에서 언급하였다.

먼저 치마에 부착된 것으로 볼 경우 왜 4頭品女에게까지만 규제가 가해졌는가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왜냐하면 4두품녀가 입는 裳이란 內裳이 아니라 表裳이고 이것은 평인녀도 착용이 가능한 복식이었기 때문이다. 앞에서 上衣와의 관계를 고찰한 결과 가슴선 여

밈용의 치마를 平人女는 착용할 수 없었고 4頭品女이 상에서 착용하였음을 알 수 있었는데, 이로부터 판단한다면 4頭品女와 平人女가 착용하는 表裳의 구조가 달랐기 때문으로 생각할 수 있다. 즉 4頭品女 이상의 경우 短衣를 먼저 입고 그 위에 가슴선에 表裳을 여미 입을 때에는 치마말기와 치마의 어깨끈이 겹으로 드러나게 되고 이에 고급소재를 사용하게 되면서 규제가 가해졌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褙를 치마에 부착된 것으로 볼 경우 이것은 치마말기 혹은 치마의 어깨끈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치마말기에 치마의 본감과 다른 異色을 사용하거나 장식적 문양을 가한 경우는 唐代의 회화자료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으로 이는 통일신라에서도 공통현상으로 나타났을 것이다. 다만 唐과 달리 어깨끈이 일반적으로 가해진 통일신라에서는 치마말기 이외에 어깨끈에도 고급소재를 사용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복식령에 나타난 규제를 보면 6두품녀와 5두품녀의 表裳에서 金銀泥 纏繡를 禁하고 있지만에서는 다만 禁 罽繡, 禁 罽繡 錦羅라 하여 金銀泥 纏繡이 허용되어 치마의 본감보다 더욱 화려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만 4두품녀의 褙는 裳과 동일하게 하도록 규정한 점으로부터 가슴선에 치마를 여미 착용하는 것이 비록 4두품까지 허용되었지만 6두품녀와 5두품녀와 달리 4두품녀에게는 치마말기와 어깨끈의 장식이 허용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 2. 褙

褙는 平人女까지 모두에게 금제가 가해진 것으로 전체 여성이 모두 착용할 수 있었던 복식은 表衣, 內衣, 袴, 表裳에 해당된다. 그리고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表衣나 內衣는 허리에 帶를 둘러 여몄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끈이 필요한 품목으로는 袴와 表裳이 남는데 평인녀에게 綾이 허용될 정도로 고급소재를 사용한 것이라면 용강동 고분 출토 여용에서 보였듯 裳의 허리에 긴 끈으로 여미고 그 자락을 앞으로 길게 늘어뜨린 모습에서 袴 보다는 表裳에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물론 平人女의 경우 용강동 여용과 같이 치마를 가슴선에서 여미 입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허리선에서 여미 입었다하더라도 여밈을 위해서는 일종의 끈

11) 김희정, 「裳과 褙에 관한 연구: 통일신라시대까지」, 서울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5, 112쪽.

위 연구자 이외 지금까지의 견해는 위 논문 111쪽-112쪽에 자세히 서술되어 있다.



이 필요하였을 것이고 그것을 길게 늘어뜨린다면 비록 치마 위에 內衣를 착용하였다하더라도 內衣 아래에 보여졌기 때문에 고급소재를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비록 후대의 것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엉덩이선 길이의 襦와 치마를 착용한 방배동 출토 고려시대 木偶 여인상을 보면 엉덩이길이의 襦 아래로 긴 끈이 드리워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襟이 치마에 따르는 것이었음은 『庚子山集』卷1 鏡賦의 '裙斜假襟'이라 하여 치마에 襟을 늘어뜨렸다는 기록에서도 확인된다. 따라서 襟은 가슴선 여밈용의 치마와 허리선 여밈용의 치마 모두에게 가해졌던 장식용 끈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 V. 결 론

본 연구는 통일신라 시대 여성의 치마에 문헌자료와 시각자료를 종합하고 이를 토대로 치마의 착용방식, 치마의 어깨끈, 흥덕왕 복식령 중 襟襟과 치마와의 관련성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첫째, 신라는 唐복식의 도입으로 치마를 가슴선에서 착용하게 되면서 삼국시대 이래 허리선에 치마를 여며 착용하는 방식과 더불어 공존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이때 치마를 이중으로 착용하기도 하였는데 이중치마에 대한 개념은 古新羅期 이미 형성되었던 것으로 순수한 唐복식 도입의 결과물로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치마와 上衣와의 관계를 고찰한 결과 길이가 짧은 短衣나 襟襟이 4頭品女이상에게만 서술된 점으로 미루어 가슴선 여밈용의 치마는 眞骨女 이하 4頭品女까지 가능하였고 平人女는 기존의 허리선 여밈만이 가능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4頭品女 이상에서 가슴선 여밈용의 치마나 허리선 여밈용의 치마는 모두 겹에 입을 경우에는 表裳이라는 단일 용어를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둘째, 가슴선에서 裳을 착용하게 되면서 부가하게 된 어깨끈은 중국에서 隋代 이후 唐초기까지는 보이지만 7세기 중엽 이후 사라진 것과는 달리 용강동 여용에서 전면적으로 사용됨으로써 주변국과는 다른 일면을 보인다. 이는 唐복식의 영향이라기 보다는 활동상의 편의를 위해 부가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그리고

이러한 치마의 어깨끈은 신라가 비록 唐의 복식을 받아들였다고는 하지만 唐복식 그대로가 아닌 신라적 변용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세 번째, 복식령 중에 나타난 襟와 襟은 동일신본에서 착용가능한 복식과 비교해 본 결과 襟는 두가지 가능성이 제기되었는데 치마말기 혹은 어깨끈이었을 것이며 襟은 치마의 여밈을 위한 장식끈을 지칭하는 용어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이상의 고찰은 현재까지 발견된 문헌자료와 시각자료에 한정된 것으로 실제 치마의 봉제 및 구성상 특징을 찾을 수는 없었으며 또한 襟襟의 문제는 비록 여러 가능성을 제시하기는 하였지만 현재로서는 단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는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추후 발굴성과를 기대하며 후속 연구의 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 참 고 문 헌

- 國立慶州博物館, 『慶州皇城洞石室墳』, 1993.  
 국립경주박물관, 특별전『신라토우』, 1997.  
 권준희, 「신라 복식의 변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  
 金元龍 主編, 『壁畫』韓國美術全集4, 同和出版社, 1974.  
 金鎮玖, 「三國史記의 服飾用語 研究(I)」, 『복식문화연구』 제5권 2호, 복식문화학회, 1997.  
 \_\_\_\_\_, 「三國史記의 服飾用語 研究(II)-色服의 의복을 중심으로-」, 『복식문화연구』 6(2), 복식문화학회, 1998.  
 \_\_\_\_\_, 「三國史記의 服飾用語 研究(IV)-色服의 부인을 중심으로-」, 『복식문화연구』 6(2), 복식문화학회, 1998.  
 東潮, 『高句麗考古學研究』, 東京: 吉川弘文館, 1997.  
 문화재연구소, 『慶州龍江河古墳』發掘調査報告書, 1990.  
 陝西省博物館 編, 『陝西省博物館』, 중국박물관총서 제1권, 北京: 文物出版社, 1990.  
 張鴻修, 『中國唐墓壁畫集』, 嶺南美術出版社, 1995.  
 河外柱 編, 『鳩峰河外柱所藏品圖錄』, 서울: 호영, 1991.  
 韓炳三 主編, 『古墳美術』韓國美術全集2, 同和出版社, 1975.  
 ジャン・フランソワ・ジャリ-ジュ, 『西域美術』, 東京: 講談社, 1994.